

『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금액을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 별표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 정비(안 별표 1)
 -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삭제
 -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삭제
 -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 정비 및 추가
- 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 보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
 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수수료 징수 관련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신청 및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통해 민원 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